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16
------	------

2023.09.05.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8월 4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3년 8월 2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3.9.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상한)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서울

특별시 조례에서 기존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정비하여 법적 체계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정비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준석)

가. 조례안의 개요

- 지난 2023년 6월 9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국가균형발전법’)이 통합되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발의됨.

나. 조례안의 일괄개정 사항

- 우리나라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최하위 수준이자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였고, 지방에서 유출되는 인구의 대부분은 수도권으로 유입되어 2022년 전체 인구의 50.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¹⁾
- 이러한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지방분권정책과 균형발전정책은 유기적인 연계 없이 개별 추진됨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계획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1) 통계청 ‘2022 한국의 사회지표’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것임
(2023. 6. 9. 제정, 2023. 7. 10. 시행).

- 그리고 신법에 근거하여 두 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 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지방시대 관련 정책을 지원할 법적 체계를 마련하였음.
- 이에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에서 인용되고 있는 구법의 명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괄개정함으로써 법률명의 상이에서 초래되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박성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016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8월 04일

발 의 자: 박성연, 김영철, 김원태,
김재진, 김형재, 남궁역,
남창진, 유만희, 이종태,
최민규, 홍국표, 황철규
의원(12명)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정비하여 법적 체계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정비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정비하여 법적 체계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 및 제79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